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종류로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통합특별시장의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순서 등을 규정함. 또한, 부칙을 통해 33개 법률의 시행령에도 통합특별시 관련 내용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광역시, 도”를 각각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자치도: 시·군 및 자치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두는 경우에는 행정시

제10조제2항 본문 중 “앞고 특별시·광역시”를 “앞고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도의”를 각각 “통합특별시·도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7항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3명,”을 “3명,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특별시의”를 “특별시·통합특별시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23조제2항 단서”를 “법 제123조제2항”으로,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특별시의”를 “특별시·통합특별시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의 사무분장은 해당 통합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7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이나 부지사의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이나 부지사 4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1)부시장·정무(1)부지사, 정무(2)부시장·정무(2)부지사의 순서
2. 부시장이나 부지사 3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 3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서
3.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서

제117조제1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120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1조제3항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제10조제2항 관련)”을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제10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마목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제10조제3항 관련)”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도의 사무 (제10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제10조제4항 관련)”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도의 사무 (제10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제10조제4항 관련)”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도의 사무 (제10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를 “지정(통합특별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통합특별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중 “도

지사”를 각각 “통합특별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도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나목을 “피해지역의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을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으로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23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으로 한다.

제88조제2호 중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중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를 “통합특별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 및 도의”를 “통합특별시의”로 한다.

⑥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⑦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

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광역시장,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광역시장,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를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으로 한다.

⑪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⑫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⑮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7항제1호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하고,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 도지사”로 한다.

⑯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합특별시·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⑪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8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제3호가목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29조의6제5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으로 한다.

㉕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㉖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㉗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광역시”를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으로 한다.

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으로 한다.

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③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③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로 한다.

③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③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①·② (생략)	제5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관계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u>광역시</u> , <u>도</u> 소속 공무원	3. ----- ----- <u>통합특별시, 광</u> <u>역시, 도, 특별자치도</u> ----- -----
4. 관계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u>광역시</u> , <u>도</u> 의 회의원	4. ----- ----- <u>통합특별시, 광</u> <u>역시, 도, 특별자치도</u> -----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 ----- ----- -----

로 결정한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시·군 및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3. (생략)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생략)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

-----.

1.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2. 특별자치도: 시·군 및 자치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두는 경우에는 행정시

3. (현행과 같음)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고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 -----

--.

③ -----

----- 통합특별시·도의 -----.

-----.

④ -----

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주민감사청구대표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서명 요청절차) ① ~ ⑥ (생략)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명요청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 6개월

----- 통합특별시

·도의 -----.

-----.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서명 요청절차)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의 계산과 서명 요청 기간의 제한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따른다.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은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②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무등급

-----.

-----.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
----- 3명,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4명, --

-----.

② -----
----- 특별
시·통합특별시·광역시 ----

특별시·통합특별시의 -----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라 한다)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④·⑤ (생략)

⑥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명칭을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신설>

-----.

③ 법 제123조제2항-----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

-- 특별시·통합특별시의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다만, 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의 사무분장은 해당 통합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⑦ ~ ⑨ (생략)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 ④ (생략)

⑤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이나 부지사 3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이나 부지사의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이나 부지사 4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1)부시장·정무(1)부지사, 정무(2)부시장·정무(2)부지사의 순서

2. 부시장이나 부지사 3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 3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서

3.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서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①

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
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보통세(廣
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의 주민세 사업소분
과 같은 장 제4절의 주민세 중
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생략)

제120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

군·구의 지정절차) ①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요청서에 시·군·구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121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의 설치를 요청해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①

통

합특별시 · 광역시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

군·구의 지정절차) ① -----

특

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

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 ⑬ (생략) 제121조(특례협회의의 구성·운영) ①·② (생략) ③ 특례협회의의 위원은 특별시장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수(同數)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u>특별시·광역시·도</u> 소속 공무원 2. ~ 4. (생략) ④·⑤ (생략)	-----. -----.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121조(특례협회의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u> ----- --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06